

회원정기신상신고 안내

약사법 제11조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회원정기신상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회원께서는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1. 신고대상 :대한민국 약사.
2. 신고기간 :2018년 1월 1일 ~ 2월 28일까지(2개월간).
3. 신고서 교부 :신고서는 신고회원님의 소속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부 합니다.
4. 신고방법.
 - 가. 신고대상자는 매년 소속지부 및 분회에 비치된 회원신고서에 본인이 직접 기록 및 확인, 변경 등을 거쳐 지부 또는 분회에 소정의 연회비와 함께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나. 신규회원 및 전입회원 등 회원신고서가 없는 경우, 지부 및 분회에 비치된 회원신고서에 본인이 직접 기록하여 소정의 연회비와 함께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.
5. 기타.
 - 가. 회원 신상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
 - 나.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신고서 뒷면의 동의 내용을 확인 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다. 신고 요령 및 연회비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본회 또는 각 지부 및 분회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1월

사단법인 대한약사회 회장 조찬휘